

■ 최신 판례 ■

[지적재산권] 경찰 내부 감사과정에서 작성된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허용 여부

최승수 변호사 | 김태형 변호사

1. 사안의 개요

원고는 2008년 8월경 경북지방경찰청에 “의성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 소외 1, 2, 3이 ‘누군가가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음식물에 농약을 타 놓고 딸감을 훔쳐갔다’는 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, 원고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국 냄비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였으며, OO경찰서 소속 경찰관 4는 위와 같은 내용의 위 경찰관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받고도 피의자로 의심되는 소외 5 및 그와 친한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내사 종결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”는 내용으로 위 경찰관들을 고소했습니다. 의성경찰서장은 원고의 고소를 계기로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경위서(이하 ‘이 사건 경위서’)를 제출받았습니다. 원고는 2008년 12월 11일 의성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의성경찰서장은 2008년 12월 12일 원고에게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정보공개법’) 제9조 제1항 제5호 등의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통지를 했습니다. 그러자 원고가 의성경찰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경위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2. 법원의 판단

가. 원심

원심(대구고등법원 2010. 8. 13. 선고 2009누2215 판결)은 ① 이 사건 경위서에는 관련 경찰관들이 원고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수사하고 주변을 탐문하여 판단에 이른 과정 및 자신들에게

직무상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 공개를 통하여 원고의 알권리를 보호하여 줄 필요성이 있는 점, ② 이 사건 경위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반복되어 거론된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감사 업무가 이미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경위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

나. 대법원

대법원은 ① 피고는 원고의 고소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이 사건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내부 감사과정에서 이를 제출받은 사실, ② 피고는 내부 감사 시 관련 직원을 출석시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피조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위서를 징구해 온 사실, ③ 원고는 2008년 7월 19일 관련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, 그 이후 2008년 9월 5일 경북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에 재수사를 의뢰하였으며, 2008년 11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사실 등을 기초로, 이 사건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.

나아가 대법원은 이 사건 경위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내부 감사과정의 피조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, 그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지 여부, 원고의 알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내부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및 원고가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, 이 사건 경위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,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상호 면밀히 비교·교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

3. 다운로드 : [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두18758 판결](#)